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18
------	------

2017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7년 2월 7일
- 다. 상정결과 : 제27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2월 27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예술적 소질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 상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풍부하게 갖춘 민간에 교육을 위탁·운영 중이며
- 위탁기간 만료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사업개요

- 사업명 : 저소득층 예술영재(음악영재) 교육지원
- 사업내용 : 음악에 소질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 발굴 및 대학 등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 교육기간 : 약 8개월간
- 교육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총 100명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1년(협약체결일 ~ 2017. 12월)
- 위탁업무
 -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교수진 구성
 -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 과정 운영, 평가
- 소요예산 : 400백만원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
 - 2008.04.22 ~ 2008.12.31 (최초,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09.03.01 ~ 2009.12.31 (재계약,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0.03.01 ~ 2012.12.31 (3년 재계약,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03.22. ~ 2014.01.31. (공개모집,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4.04.21. ~ 2015.01.31. (공개모집,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03.01. ~ 2015.12.31. (재계약,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03.15. ~ 2016.12.31. (공개모집,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고급 예술교육 대부분이 비용이 높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재능을 발견하거나 발전시킬 기회가 낮아 공적 영역에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음.
-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기획·운영되어야 하고,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공간 및 기자재 등이 확보되어야 함.
- 따라서 학생선발 및 교육경험 노하우가 풍부하고, 교수진·교육 공간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 등 민간에 교육을 위탁·추진함이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매 4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기 타

- 2017 서울시 저소득층 음악·미술 영재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문화예술과-5306, '16.12.06.)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본 동의안은 서울시 저소득층 음악영재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우리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임.
-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미술영재 교육지원 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예술적 재능과 잠재력 있는 서울거주 저소득층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음악 이론 및 실기수업, 연주회 개최 등의 교육지원을 실시하여 2016년에는 100명을 모집한 바 있음.

<표 1>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p>「문화예술진흥법」</p> <p>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문화예술교육지원법」</p> <p>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p>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9년간 7차례 민간위

탁이 추진되어 왔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제1항에 따라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7회차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되었으므로 2016년 말 제271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건임.

<표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p>「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 서울시는 2017년도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 예산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고, 본 사업의 수급 대상으로 사회취약계층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구분 중 최하위 그룹으로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장(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이하)’을 뜻하는 것으로 본래 경제적 여건 상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3> 우리나라 저소득층 구분

구분	내용
차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계층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계층
기초생활수급장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인 계층
※ 소득인정액 : 개별기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2017년 4인가구 월 최저생계비 : 2,680,428원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2008년 실시된 이래 현재(2016년)까지 총 808명이 수급을 받았으며, 총 79명이 예술학교로 진학하였고, 193개의 콩쿠르에서 121명이 수상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여왔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에 따라 사업 소관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는 그동안 본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온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7년도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저소득층 미술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에 비해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지난 9년간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만 민간위탁이 추진되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 2008년~2016년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 추진현황

구 분	수 탁 기 관	교육인원	선 발	비 고	
				예술학교 진학	콩쿠르 수상
2008년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60명	공 모	10명	7명(8개)
2009년		75명	재 계 약	3명	9명(16개)
2010년		74명	3 년 재 계 약	13명	16명(32개)
2011년		99명		7명	23명(33개)
2012년		100명		12명	9명(15개)
2013년		100명	재 위 탁 (공 모)	10명	17명(32개)
2014년		100명	재 위 탁 (공 모)	9명	10명(12개)
2015년		100명	재 계 약	8명	17명(17개)
2016년		100명	재 위 탁 (공 모)	7명	13명(28개)
총 계		총 808명		총 79명	총 121명(193개)

※ 콩쿠르 수상은 복수 수상실적을 포함함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6년 12월 6일 2017년도 예술영재 민간위탁 재계약(1년) 추진계획(본부장방침 5306호)에 따라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 결과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에서 90.67점(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적격')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서울시 조직담당관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17.1.23.)에서도 '적정'으로 심의결과를 받은 바 있음.

- 또한,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미술영재 교육지원 사업과 의회 동의 대상연도가 다르므로 향후 재계약 등을 통해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사업으로 묶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5>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사업의 시의회 동의 대상연도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음악영재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미술영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음악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18
----------	------

제출년월일 : 2017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 사무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예술적 소질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 상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인적·물적 인프라 등을 풍부하게 갖춘 민간에 교육을 위탁·운영 중이며
- 다. 위탁기간 만료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저소득층 예술영재(음악영재) 교육지원
- 사업내용 : 음악에 소질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 발굴 및 대학 등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 교육기간 : 약 8개월간
- 교육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총 100명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1년(협약체결일 ~ 2017. 12월)
- 위탁업무
 - 교육커리큘럼 기획 및 교수진 구성
 - 교육장소 및 협력시설, 교육 기자재 및 물품 확보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 과정 운영, 평가
- 소요예산 : 400백만원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라. 민간위탁 추진현황

- 저소득층 음악영재 교육지원 사업
 - 2008.04.22 ~ 2008.12.31 (최초,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09.03.01 ~ 2009.12.31 (재계약,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0.03.01 ~ 2012.12.31 (3년 재계약,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03.22. ~ 2014.01.31. (공개모집,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4.04.21. ~ 2015.01.31. (공개모집,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03.01. ~ 2015.12.31. (재계약,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03.15. ~ 2016.12.31. (공개모집,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마.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고급 예술교육 대부분이 비용이 높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재능을 발견하거나 발전시킬 기회가 낮아 공적 영역에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발굴·지원할 필요가 있음.
- 수준 높은 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기획·운영되어야 하고, 우수한 교수진과 교육공간 및 기자재 등이 확보되어야 함.
- 따라서 학생선발 및 교육경험 노하우가 풍부하고, 교수진·교육 공간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 등 민간에 교육을 위탁·추진함이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매 4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17 서울시 저소득층 음악·미술 영재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문화예술과-5306, '16.12.06.)

※ 작성자 :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임현진 (☎ 2133-2566)